

5] 행정운영경비

5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-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사하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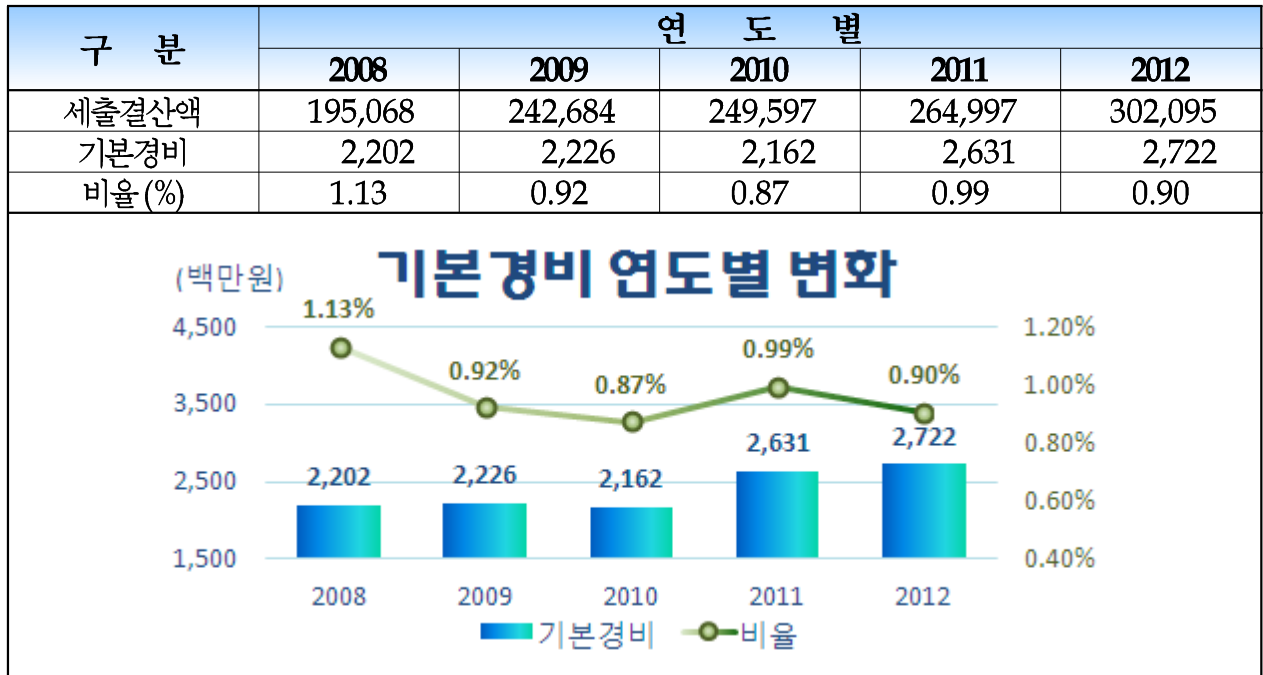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302,095	2,722	0.90	
일반운영비		706	0.24	
여 비		1,537	0.51	
업무추진비		353	0.12	
직무수행경비		94	0.03	
자산취득비		31	0.01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- ▶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(201-01)+공공운영비 (201-02),
여비는 국내여비 (202-01)+월액여비 (202-02),
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 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 (203-04)
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(204-01),
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(405-01)

8 연도별 비교

(단위 : 백만원, %)



▶ '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☞ 2011년부터 기본경비 집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기본경비항목에 추가되었기 때문이고, 기본경비는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5-2. 자치단체 청사 관리·운영현황

● 우리 사하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,904㎡이 적고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(단위 : ㎡, 백만원)

사하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(㎡)	사하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(㎡)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(㎡)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(백만원)
3,549㎡	6,453㎡	△2,904㎡	0

▶ 「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」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